

제3조(보험료의 납입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종전의 제47조 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도록 약정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험업무 실적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종전의 제47조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도록 약정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3조제3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거래가 없어 거래중지된 예금계좌의 명칭을 정리계좌에서 거래중지계좌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위법한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고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예금계좌가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료의 횡령·유용 등이 발생할 여지가 큰 방문수금을 통한 보험료 납입 방식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환경부령 제895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을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시·도지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중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22호의 물질”을 “영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수집·운반·보관·처분하여야”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를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수집·운반·보관·처분하여야”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를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수집·운반·보관·처분하여야”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로 한다.

별표 12 제2호의 업무내용란 중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을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및 행정처분의 공표 현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 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1.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100피코그램 티이큐(pg-TEQ) 나. 고체상태의 물질:그램당 3나노그램 티이큐(ng-TEQ)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0.05밀리그램 나. 액체상태 외의 물질 1) 금속판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 형태의 물질: 100제곱센티미터당 0.05마이크로그램 2) 구리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비평면 형태의 물질: 킬로그램당 0.005밀리그램 3) 그 밖의 물질: 용출액 리터당 0.0005밀리그램
3. 폐농약에 함유된 잔류성오염물질	리터당 0.1나노그램

비고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등 총 175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속서 에이(A)를 채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정하는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 일몰이 설정된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9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폭발성 물질”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및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그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별표 7 제2호라목 중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과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별표 7 제2호아목 중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차목 중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각각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